의 변경을 예상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을 곧바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평가하거나 위 지시에 따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. 또한 위 매각지시 중재무부의 업무방법서 변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이 자기자본의 100%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보유한 것으로 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생긴 사정일 뿐이다.

따라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감독관청인 재 무부의 매각지시 때문에 이 사건 토지지 분을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그 매각에는 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. 결국 원심판결 이유 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법 제112조의3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법리오해,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.

##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

## 無體物(早체물)

有體物 이외의 물건을 말하는데 民法의 규정을 보면 민법에서 物件이라 함은 有體物 및 電氣 기타 管理할 수 있는 自然力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旧民法에서는 無體物을 物件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新民法에서는 熱, 光, 原子力, 風力따위의 에너지와 같은 일정한 要件을 갖춘 無體物도 法律上의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.

- 편집실 -